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2월 9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2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,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정진)

- 본 조례안은
 - 수도물 절수 생활화와 수도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,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은
 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 등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인 공공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,
 - 안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고,
 -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서는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, 홍보 및 표창,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
 -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,
 -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현상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·전남지역에서도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이 1973년 통계 이후 두

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

- 서울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“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, 전국적으로는 50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임.
- 이에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2월

발의자 : 이성수, 000(0인)

1. 제안이유

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,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라.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2. 9. ~ 2023. 2. 13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절수설비”란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.
2. “절수기기”란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(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)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(이하 “절수설비 등”이라 한다)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도록

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설치대상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사,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
2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시설
3.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(설치이행 등)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)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, 홍보 및 표창
2.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
3.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
4.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